

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주식회사 포스코 및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는 2018년 11월 3일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주식회사 포스코가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를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·의무를 승계하고,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는 해산하기로 결의한 바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제출대상 : 주식회사 포스코의 채권을 보유하신 채권자
 - * 단, 당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합병에의 이의신청권리 또한 소멸됩니다.
- 이의제출 기간 : 2018년 11월 5일 ~ 2018년 12월 31일
- 이의제출 방법 및 장소 :
 - 가. 금융기관 채권자 : 포스코 재무실 자금그룹에 서면 제출
 - * 제출처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25층 자금그룹(02-3457-1653)
 - 나. 상거래 채권자 : 포스코 재무실 회계그룹에 서면 제출
 - * 제출처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25층 회계그룹(02-3457-1486)
- 상법 제530조 제2항 및 제439조 제3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,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채권자가 상기 제출기간 종료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527조의5 제3항 및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2018년 11월 5일
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
주식회사 포스코
대표이사 장인화